

「장학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12. 11. 26. 개정 판 (시행 2012. 11. 26.) → 2013. 8. 28. 개정 판 (시행 2013. 9. 1.)

바뀜 3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195/compare?from=493&to=501>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9:03:14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구성) 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1-26> ①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된다. ②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지원팀장(서기), 재무실장, 교무부장, 예산팀장,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 ③ 서기는 학생지원팀장이 된다.	제6조(구성) 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와 장학실무위원회를 둔다. ① 장학위원회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지원팀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② 장학실무위원회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지원팀장(서기), 교무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8-28>
제7조(기능) 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한다. ① 장학금에 관한 기본방침 ②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종류별 지급액, 지급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③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④ 장학금에 관한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장학금에 관한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한다. ① 장학위원회 1. 장학금에 관한 기본방침 2. 장학금 지급규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수혜 자격에 관한 사항 4. 장학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유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학관련 사항 ② 장학실무위원회 1. 장학금 수혜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유치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학관련 사항 <개정 2013-08-28>
제9조(회의소집) ① 장학위원회는 매 학기 초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소집) ① 장학위원회와 장학실무위원회는 매 학기 초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08-28>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장학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구성) 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와 장학실무위원회를 둔다.

① 장학위원회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지원팀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② 장학실무위원회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지원팀장(서기), 교무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한다.

① 장학위원회

1. 장학금에 관한 기본방침
2. 장학금 지급규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수혜 자격에 관한 사항
4. 장학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유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학관련 사항

② 장학실무위원회

1. 장학금 수혜자 결정에 관한사항
2. 장학금 유치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학관련 사항

제9조제1항 중 "장학위원회"를 "장학위원회와 장학실무위원회"로 하고, "있다."를 "있다. <개정 2013-08-28>"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